서울특별시 마포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

의 안 번 호	21-74관련

발의년월일 : 2021. 9. .
발 의 자 : 채우진의원 외 1명

1. 수정이유

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에서 구체적인 감액조정률을 조례에 위임하고 있으므로 임의규정이 아닌 강행규정으로 하여 감액률을 구체화 하여 반영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안 제30조 중 “전부 감액 조정 할 수 있다”를 “감액조정하는 감액률은 100분의 100으로 한다”로 변경함.

서울특별시 마포구 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 마포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

서울특별시 마포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0조 중 “전부 감액 조정 할 수 있다”를 “감액조정하는 감액률은 100분의 100으로 한다”로 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수 정 안
제30조(대부료 등에 관한 특례) 영 제16조 및 제34조에 따라 해당 대부기간 중 전년도의 대부료보다 100분의 5 이상 증가한 경우, 그 증가한 부분 중 100분의 5를 초과한 증가분에 대하여 감액 조정하는 감액율은 100분의 70으로 한다.	제30조(대부료 등에 관한 특례) 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 전부 감액 조정 할 수 있다.	제30조(대부료 등에 관한 특례) 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 감액 조정하는 감액률은 100분의 100으로 한다.